

제 호 최초등록일 : 년 월 일

등록관청명 **작인**

210mm×297mm (백상지 120g/ m²)

자동차소유자 유의사항

- 자동차사용자는 이 증을 자동차 안에 갖춰두고 운행해야 합니다(위반 시 과태료 5만원).
- 주소·성명 등의 변경등록
 - 전입신고일 또는 사유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새로운 사용본거지의 시·군·구청 또는 자동차등록관청에 주소·성명 등의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(위반 시 30만원 이하의 과태료).
- 자동차소유자는 정기검사 또는 자동차종합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(유효기간 경과 시 30만원 이하 과태료).
- 구조·장치의 변경승인
 - 자동차의 구조·장치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교통안전공단에서 구조·장치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합니다(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).
- 이전등록
 - 양수인은 이전사유별로 다음의 기간 내에 이전등록신청을 해야 합니다(위반 시 50만원 이하의 범칙금).
 -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, 증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,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, 그 밖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
 - 양수인이 15일 이내에 이전등록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도인도 양수인을 대신하여 이전등록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
- 말소등록
 - 사유(폐차요청 등)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폐차인수 증명서와 자동차등록증을 첨부하여 말소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(위반 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).
- 무단방치 자동차의 강제처리
 - 자동차를 도로 등에 무단방치하는 경우에는 폐차 등 강제처리대상이 됩니다(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).

자동차등록증

○○시·도

5. 변경등록사항

㉟ 성명	㉞ 주소	㉟ 등록일자	㉠ 확인

6. 구조·장치 변경사항

㉡ 내용	㉢ 검사일자	㉣ 검사책임자확인

7. 기타

㉤ 내 용	㉥ 일자	㉦ 확인